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6의5] <개정 2021. 12. 31.>

총포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
검사시설기준(제50조제4항관련)

1. 총포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

- 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·금속·화공·물리·전기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
- 나. 군의 병기학교에서 3월 이상의 총포분야교육을 이수하고 총포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. 공인된 시험·검사기관에서 총포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에 관한 시험·연구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라.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 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마. 총포제조업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바. 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제조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총포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검사시설의 기준

가. 검사시설의 면적

구 분	검 사 실	시 사 대	격 납 고
최저보유면적 (제공미터 이상)	30	10	7

나. 시험기기명 및 규격

번 호	시 험 기 기 명	규 격	비 고
1	경도(단단한 정도) 시험기		
2	충격치시험기		
3	압력측정기 가. 컴프레서 나. 유압측정기	211kg/cm ²	
4	탄속측정기		
5	방아쇠압력측정기	1~3kg	
6	정밀비교측정기		
7	다이얼노기스	150 ^m / _m	
8	실린더게이지	15~30 ^m / _m	
9	마이크로미터	0~13 ^m / _m	
10	스몰게이지	3~13 ^m / _m	
11	줄 자	3m	
12	약제분석기		
13	공기정화측정기		

14	절연시험기		
15	고전압측정기		
16	다기능시험기		